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정	2009. 1. 13.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7. 20.
개정	2013. 1. 10.
개정	2013. 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3. 27.
개정	2018. 12. 24.
전면개정	2021. 1. 25.
개정	2021. 5. 18.
개정	2023. 3. 29.
개정	2024. 3. 12.
<u> 개정</u>	<u>2026. 1. 15.</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승마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본 협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및 영상분석,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본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본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본 협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 ② 트레이너는 본 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트레이너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협회 회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협회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3. 12.>
 1.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5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승마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3. 12.>
 1.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

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승마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승마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승마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승마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제6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 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본 협회 회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 회장이 한다.
- ③ 제1항 이외의 경기 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 경기 임원을 선발 할 경우 사전에 선발 과정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 ⑤ 경기 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 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 임원 선발은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 회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 ⑦ 종목별 대회의 경기 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 ① 국가대표 선수는 본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발 일정등 세부 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협회 회장이 결정한다.
-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③ 본 협회 회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승마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④ 본 협회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본 협회 회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정한 바가 없으면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선발할 경우에도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⑧ 제6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종목별 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승마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사람 <개정 2024. 3. 12.>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본 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승마협회 또는 산하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
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
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
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
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
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
련한 불공정 행위(부정 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
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4. 3. 12.>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 3. 12.>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 3. 1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 3. 12.>

제11조(국가대표선수 선발 방법)

① 아시아경기대회

1. 선발종목 : 장애물, 마장마술, 종합마술 및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추가종목
2. 선발수준 : 각 종목 아시아경기 수준에 준하여 실시
3. 선발시기 :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
4. 선발방법

가. 마장마술, 장애물

- 1) 선발전은 3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변경 가능하며, 선발전의 전 성적 또는 포인트의 합계로 선발한다.
- 2) 선발전에 참가하는 출전선수에 대한 마필 참가 두수의 제한은 없다.
- 3) 선수와 말 조합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4) 중복 출전선수 순위는 출전 마필 중 최상위 성적 선수와 말 조합을 우선 기준 한다.
- 5) 출전 말의 나이 및 선수의 출전조건에 대한 제한은 해당 경기의 규정 및 요강에 의한 선발 조건에 따른다.
- 6) 엔트리에 예비마 추가가 가능하며 선정 시 선발전 참가 마필 중에 해당 종목 국가대표 코치가 선정한다.

나. 종합마술

- 1) 아시아경기대회 수준에 맞는 FEI에서 인정하는 최소자격기준(MER)을 획득한 선수를 선발하고 MER 획득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MER 획득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 2) 동점자 발생 시 FEI 종합마술 규정 528.1.6에 따라 선발 한다.

다. 국가대표 선발 확정 후 각종 사유로 선발된 선수와 말 조합이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차순위 조합으로 교체한다. 이때 선수와 말 조합의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 한다.<개정 2024. 3. 12.>

라. 각 종목별 선수는 중복 선발이 가능하다. <신설 2024. 3. 12.>

② 올림픽경기

1. 선발종목 : 장애물, 마장마술, 종합마술 종목

2. 선발방법

가. 국제승마협회의 올림픽 참가자격(Qualification System)에 따라 선수와 말 조합의 통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선수 및 말의 출전조건에 대한 제한은 해당 경기의 규정 및 요강에 의한 선발 조건에 따른다.

다. 국가대표선수 선발 확정 후 각종 사유로 선발된 선수와 말 조합이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와 말의 조합으로 교체한다.

라. 가항에 따라 선수 선발 불가 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가 결정하여 추가 선발전을 개최한다. 추가 선발전 불가 시 마장마술 종목은 올림픽 참가자격(Qualification System)에 따라 MER대회(2개)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고, 합산비율이 같을 경우 5* 심판 2명의 성적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마. 당해연도 올림픽 출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로 지정하고,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 중 국가대표 선발포인트가 최저점인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제외된다.

③ 국제대회 및 국내외 전지훈련

1. 당해년도 해당 종목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선발하여 파견한다. 단, 국가대표가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2. 해당 선수가 참가 또는 국제대회 및 국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

당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순위에 따른 각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선발하며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별도의 선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3. 개인 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사전에 대회 요강 및 신청서를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회장의 재가로 출전할 수 있다.
4. WEG(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에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팀)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협회 회장의 재가로 출전할 수 있다.

④ 경기력향상을 위한 국가대표선수 선발

1.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선수와 말의 조합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연도에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에 우선하여 국가대표로 배정된다.
3.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는 각 종목별 전년도 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회 중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에 한하여 선발하되, 개최 여부에 따라 선발대회 수가 축소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4. 각 종목별 국가대표 포인트 부여 지정대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2., [2026. 1. 15.](#)>

종 목	대 회 명	대회수
마장마술	대통령기, 회장배, 춘계대회, 추계대회, 후원사배 대회	5개
장애물		
종합마술		

5. 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 배점 기준표(별첨 #1) 및 아래 구분표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여 각 종목별 통합순위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가 의결하여 선발한다. <신설 2024. 3. 12.>
6. 위원회에서 포인트 부여가 부적합(초청경기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대회의 대회 요강에 제외함을 명시하고 포인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2.>

7. 최종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신설 2024. 3. 12.>

구 분	우 선 순 위
1순위	상위 Class에서 고득점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를 우선
2순위	동일 Class에서 최고 포인트 획득한 선수를 우선
3순위	최근 대회 포인트가 고득점인 선수를 우선
4순위	국제경기에서 고득점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 우선
5순위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발

8. 선수가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중복 선발 시 1개 종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에 따른 잔여 선발인원은 차순위 선수로 한다. <신설 2024. 3. 12.>

9. 각 종목별 선수와 말 조합이 상위 순위로 선발되었을 경우, 각각의 선발된 선수 또는 말은 하위 순위 선수와 말 조합에서 선발될 수 없다. <신설 2024. 3. 12.>

10. 각 종목별 선수와 말 조합 상위 순위가 선발을 포기할 경우, 각각의 선발 예정이던 선수 또는 말은 하위 순위 선수와 말 조합에서 선발될 수 없다. <신설 2024. 3. 12.>

선수	말	가 선수 포기 시 선발 여부	A 말 포기 시 선발 여부
가	A	X	X
나	B	O (1위)	O (1위)
가	C	X	O (2위)
다	A	O (2위)	X

11. 구분표 <개정 2024. 3. 12.>

구분	내용
대표선수기간	당해연도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
장애물	본 협회가 상기 지정한 대회 중에서 140Class 이상 종목 통합 순위 성적
마장마술	본 협회가 상기 지정한 대회 중에서 PSG(S-1 Class)이상 종목 통합순위 성적
종합마술	본 협회가 지정한 대회 중에서 종합마술 및 복합마술 종목 통합순위 성적
국제대회 성적	① 본 협회가 지정한 대회의 연간 세부 종목별 합산 수와 동일한 횟수 성적만 인정 ② 국제대회는 대회명, 기간과 관계없이 성적을 인정하되 해당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이 많은 경우 국내대회를 포함하여 상위 성적을 인정 (본 협회에 미제출된(해당연도 12월 5일) 국제대회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제12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 ① 본 협회 회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 ② 본 협회 회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3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제15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 결과 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 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 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 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

하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협회는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제18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제·개정)

-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②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3차 개정 승인 이전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011년도 후반기 국

가대표선수는 선발한다.

부 칙 <2011. 7. 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에 선발된 국가대표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대표 선발 배점 기준

□ 마장마술 배점 기준

- 비율 소수점 첫째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포인트로 환산하여 배점한다.

(예: S-1 Class 비율 67.346% → 120점+3점 / S-2 Class 비율 69.874% → 240점+8점)

□ 장애물 배점 기준

1. 장애물 해당 Class의 통합 1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만 해당 배점 인정.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물 경기의 국가대표 포인트를 인정한다.

- S-1 Class : 본경기 무감점 성적의 선수만 배점 인정

- S-2 Class : 본경기 감점-8이하 성적의 선수만 배점 인정

- S-3 Class : 본경기 감점-12이하 성적의 선수만 배점 인정

- S-4 Class : 본경기 감점-16이하 성적의 선수만 배점 인정

□ 국제대회 배점방법

1. FEI가 인정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성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각 종목별 본 협회에서 지정하는 국내대회의 연간 Class별 개최 합산 수와 동일한 횟수로 국제대회 참가 성적을 배점한다.

나. 국내에서 미 개최 될 수 있는 상위 Class의 경기 성적은 차순위 Class의 포인트로 배점이 가능하나, Class별 합산 개최 수를 초과하여 배점 할 수 없다.

다. 배점 기준표에 따른 국제경기 출전 성적이 국내경기 개최 수보다 초과될 경우 추가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3. 국제경기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12월 5일까지 본 협회에 성적을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성적이 반영된다.

국가대표 선발 배점 기준 < 종합마술, 지구력 >

번호	종합마술	포인트		지구력	포인트	
<u>1</u>	국내 종합마술	1위	<u>90</u>	국내 지구력 80km 초과	1위	<u>90</u>
		2위	<u>80</u>		2위	<u>80</u>
		3위	<u>75</u>		3위	<u>75</u>
		4위	<u>70</u>		4위	<u>70</u>
		5위	<u>65</u>		5위	<u>65</u>
		6위	<u>60</u>		6위	<u>60</u>
		7위	<u>55</u>		7위	<u>55</u>
		8위	<u>50</u>		8위	<u>50</u>
<u>2</u>	CCI 1스타	1위	<u>135</u>	CEI 1스타	1위	<u>135</u>
		2위	<u>125</u>		2위	<u>125</u>
		3위	<u>120</u>		3위	<u>120</u>
		4위	<u>115</u>		4위	<u>115</u>
		5위	<u>110</u>		5위	<u>110</u>
		6위	<u>105</u>		6위	<u>105</u>
		7위	<u>100</u>		7위	<u>100</u>
		8위	<u>95</u>		8위	<u>95</u>
<u>3</u>	CCI 2스타	1위	<u>180</u>	CEI 2스타	1위	<u>180</u>
		2위	<u>170</u>		2위	<u>170</u>
		3위	<u>165</u>		3위	<u>165</u>
		4위	<u>160</u>		4위	<u>160</u>
		5위	<u>155</u>		5위	<u>155</u>
		6위	<u>150</u>		6위	<u>150</u>
		7위	<u>145</u>		7위	<u>145</u>
		8위	<u>140</u>		8위	<u>140</u>
<u>4</u>	CCI 3스타	1위	<u>225</u>	CEI 3스타	1위	<u>225</u>
		2위	<u>215</u>		2위	<u>215</u>
		3위	<u>210</u>		3위	<u>210</u>
		4위	<u>205</u>		4위	<u>205</u>
		5위	<u>200</u>		5위	<u>200</u>
		6위	<u>195</u>		6위	<u>195</u>
		7위	<u>190</u>		7위	<u>190</u>
		8위	<u>185</u>		8위	<u>185</u>
<u>5</u>	CCI 4스타	1위	<u>1000</u>	CEI 4스타	1위	<u>1000</u>
		2위	<u>800</u>		2위	<u>800</u>
		3위	<u>700</u>		3위	<u>700</u>
		4위	<u>600</u>		4위	<u>600</u>
		5위	<u>500</u>		5위	<u>500</u>
		6위	<u>400</u>		6위	<u>400</u>
		7위	<u>300</u>		7위	<u>300</u>
		8위	<u>250</u>		8위	<u>250</u>